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11. 2013고합577, 2013고합1060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2인

【검 사】진재선(기소), 박형철(기소 및 공판), 윤석열, 이복현, 김성훈, 단성한, 김태은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처음 외 4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, 피고인 2,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